

제338회 임시회  
2015.03.13.(금)

# 심 사 보 고 서

1.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03.13.(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윤 홍 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02월 2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2월 2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3월 05일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홍창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교육행정협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2) 교육행정협회는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3) 교육행정협회 정기회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4) 협의회 운영 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견조정, 안전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 5)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지역교육행정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 glocalization)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세계 각국이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추진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상호의견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충청북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협력의 체계화와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의 세부추진 계획과 시행규칙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안전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전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비용 추계서

## 1. 비용 추계 내용

### ○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예산 추계

## 2. 비용 추계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시행되면 3,6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구분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충청북도 교육행정 협의회 운영비		3,640천원	3,640천원	3,640천원

## 3. 비용 추계 상세내역

###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3,640천원
  - 용품비: 20,000원×10종×6회=1,200,000원
  - 현수막: 100,000원×2회=20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70,000원×3명×2회=420,000원
  - 업무협의회비: 30,000원×17명×2회=1,020,000원
  - 실무협의회비: 20,000원×10명×4회=800,000원

## 4. 작성자 : 충북교육청 기획관 행정6급 장영철(220-2162)